제26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6. 1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년 6월 17일

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19 - 35

나. 제 안 자: 정정희 의원 외 11명

다. 제안일자: 2019년 5월 31일

라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
2. 제안이유

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(약칭 제1조→제3조)

나.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확대 운영 위탁운영 근거 조항 신설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: (2019. 6. 3. ~ 6. 10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개정안, 신·구조문 대비표, 관계법령: 붙임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이 개정조례안은 이동 장애인, 노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무료셔틀버스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종합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[1]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---

1) **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○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무료셔틀버스 사업의 확대와 적정한 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·노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임

○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(버스 구입비, 정류장 설치 및 교체, 민간위탁 운영비 등) 및 위탁운영업체 선정, 노선 정비 등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붙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

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, 위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은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